

2016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48
----------	------

2016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 11. 25.
- 제출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회부일자 : 2016. 11. 28.
-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16. 12. 12.)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및 의결

II. 제안설명 요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1. 제안이유

- 목적지정 지원금 우선확정 사용분을 계상하기 위하여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

2.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 제4회 추경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총 8조 6,283억원으로
기정예산(8조 5,681억원) 보다 601억원 증가함
- 세입예산의 증감내역
 - 증가된 세입예산은 전액 목적지정재원 601억원으로
 - 국고보조금 254억원, 특별교부금 232억원,
광역자치단체지원금 85억원, 기초자치단체 24억원,
타시도교육청 전입금 6억원, 기타 지원금 1,000만원임

○ 세출예산의 증감내역

- 증가된 세출예산은 전액 지정된 목적에 따라 편성한 601억원으로
- 국고보조금 254억원 중
 정부추경으로 추가 교부된 국고목적예비비 253억원은
 우레탄교체, 내진보강, 석면제거에 편성하였고
 나머지 기타보조금 1억원은 흡연예방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
- 특별교부금 232억원은
 신화중 다목적강당 증축비 등 시설사업 21건, 중학교 공연장 구축지원 등
 프로그램사업 2건 등 총 23건의 지역교육현안과
 안전체험센터운영비 등 35건의 국가시책수요사업비로 편성
-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85억원은
 학습준비물지원, 중학교방과후공부방운영, 영어원어민인건비,
 학기중평일급식지원, 창의아이디어경진대회수상자 해외탐방비 등 12건 편성
-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24억원은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수송초 복합화시설 증축비 및 BTL원금이자 등 11건 편성
- 타시도교육청 전입금 6억원은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프로그램 운영 시도분담금 등 7건 편성

3. 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편성액		기정예산액 (B)	증감내역	
		금액(A)	비율		증감액(A-B)	비율(%)
총 규 모		8,628,272	100%	8,568,138	60,134	0.7%
세 입	중앙정부이전수입	5,060,251	58.7%	5,011,605	48,646	1.0%
	자치단체이전수입	2,640,717	30.6%	2,629,814	10,903	0.4%
	기타이전수입	11,220	0.1%	10,635	585	5.5%
	자체수입	175,915	2.0%	175,915	0	0.0%
	지방교육채	421,065	4.9%	421,065	0	0.0%
	전년도이월금	319,104	3.7%	319,104	0	0.0%
세 출	인건비	5,248,321	60.8%	5,248,321	0	0.0%
	기관운영비	38,419	0.5%	38,419	0	0.0%
	학교운영비	717,279	8.3%	717,279	0	0.0%
	교육사업비	1,773,979	20.6%	1,757,669	16,310	0.9%
	시설사업비	656,784	7.6%	613,131	43,653	7.1%
	지방교육채및BTL	183,254	2.1%	183,083	171	0.1%
	예비비및기타	10,236	0.1%	10,236	0	0.0%

Ⅲ. 검토보고(전문위원 엄지운)

①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

- 「2016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16년 11월 25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¹⁾ 및 「지방재정법」 제45조²⁾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여건과 관련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편성할 수 있음

②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 개요

-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조 5,681억원 대비 0.7%, 601억원이 증액된 8조 6,282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 증액된 예산 전액은 제3회 추경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교부된 목적지정 지원금(우선확정)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³⁾ 및 예산총칙 제9조⁴⁾에 따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한 것임

-
- 1)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2)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3)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4) 예산총칙 제9조 회계연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되는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 목적지정지원금은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 연도내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표 2-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단위 : 백만원, %)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추경예산증감내역			
		증감 (C=A-B)	증감률	일반재원	목적지정 지원금 (우선확정)

- 세입예산의 증액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전체 세입액의 80.9%, 486억 4,600만원이며, 자치단체이전수입은 18.2%, 109억 300만원, 기타이전수입은 1.0% 5억 8,500만원임

<표 2-2>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 규모

(단위 : 백만원, %)

총계	일반재원	목적지정 지원금(우선확정)			
		합 계	중앙정부 이전수입	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60,134	0	60,134	48,646	10,903	585
(100.0)	0	(100.0)	(80.9)	(18.1)	(1.0)

<표 2-3> 세입재원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내역			
			증감 (C=A-B)	증감률	일반재원	우선확정
이전수입	7,712,188	7,652,054	60,134	0.8	0	60,134
중앙정부이전수입	5,060,251	5,011,605	48,646	1.0	0	48,646
자치단체이전수입	2,640,717	2,629,814	10,903	0.4	0	10,903
기타이전수입	11,220	10,635	585	5.5	0	585
자체수입	175,915	175,915	0	0.0	0	0
지방교육채	421,065	421,065	0	0.0	0	0
전년도이월금	319,104	319,104	0	0.0	0	0

- 세출예산은 목적이 이미 지정된 70개 사업에 대해 601억 3,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바,
 - 교육사업비의 경우, 총 163억 1,0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금(16억 2,000만원),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공연시설 구축비(10억원) 등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비(27억 6,100만원), 영어 원어민 인건비 및 제경비(20억 2,600만원⁵⁾), 학기중 평일급식비 지원금(19억 6,400만원) 등의 60개 사업에 대해 목적지정 지원금을 편성한 것임
 - 시설사업비는 436억 5,300만원을 증액한 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된 우레탄 체육시설 교체 사업(57억 3,500만원⁶⁾), 석면, 내진보강 등 환경개선사업(230억 7,500만원), 지역현안수요를 반영하여 교부된 교육환경개선사업(128억 4,3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 부담 수송초 복합화 사업비(20억원) 등 8개 사업에 대해 목적지정 지원금을 편성한 것임
 - 지방채및BTL상환은 복합화시설에 대한 지자체 부담 BTL임대료 1억 7,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 기타 인건비, 경상비, 예비비 및 기타의 경우 기정예산과 동일함

<표 2-4> 세출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B)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8,628,272	100.0	8,568,138	100.0	60,134	0.7	
인건비	공무원인건비	4,223,079	48.9	4,223,079	49.3	0	0.0
	사립학교인건비	1,025,242	11.9	1,025,242	12.0	0	0.0
	계	5,248,321	60.8	5,248,321	61.3	0	0.0

5) 영어 원어민 인건비 및 제경비 재원별 상세

(단위 : 백만원)

합계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비고
2,026	1,840	222	

6) 우레탄 교체 사업 재원별 상세

(단위 : 백만원)

합계	국고목적예비비	특별교부금	비고
5,735	2,244	3,491	국고목적예비비 총액 : 25,319

경상비	기관운영비	38,419	0.5	38,419	0.4	0	0.0
	학교운영비 (사립포함)	717,280	8.3	717,280	8.4	0	0.0
	계	755,699	8.8	755,699	8.8	0	0.0
사업비	교육사업비	1,773,979	20.6	1,757,669	20.5	16,310	0.9
	시설사업비	656,783	7.6	613,130	7.2	43,653	7.1
	계	2,430,762	28.2	2,370,799	27.7	59,963	2.5
지방채 및 BTL상환	지방채상환	76,533	0.9	76,533	0.9	0	0.0
	BTL 상환	106,721	1.2	106,550	1.2	171	0.2
	계	183,254	2.1	183,083	2.1	171	0.1
예비비및 기타	예비비	10,236	0.1	10,236	0.1	0	0.0
	계	10,236	0.1	10,236	0.1	0	0.0

③ 세입예산관련 검토

-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분에 대한 세입재원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기관 등으로부터 전액 목적지정되어 교부된 이전수입으로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및 전년도이월액의 증감은 없음

1. 중앙정부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예산(5조 116억 500만원) 보다 486억 4,600만원 (1.0%)을 증액한 5조 602억 5,100만원을 편성요청 한 것임

<표 3-1> 중앙정부이전수입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B)	증 감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5,060,251	5,011,605	48,646	1.0
보통교부금	4,813,247	4,813,247	0	0.0
특별교부금	147,692	124,494	23,198	18.6
국고보조금	99,312	73,864	25,448	34.5

-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우레탄 체육시설 교체(34억 9,100만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16억 2,000만원), 지역교육현안수요 사업(144억 2,100만원) 등 39개 사업, 231억 9,800만원을 반영한 것임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기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 흡연 예방 프로그램 운영비(1억 2,800만원)와 우레탄 체육시설 교체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국고 목적예비비(253억 1,900만원)⁷⁾ 등 총 254억 4,800만원 증액편성하였음

2. 자치단체이전수입

- 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액은 2조 6,407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2조 6,298억 1,400만원)보다 109억 300만원(0.4%)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표 3-2> 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B)	증 감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2,640,717	2,629,814	10,903	0.4
법정이전수입	2,585,450	2,585,450	0	0
비법정이전수입	55,267	44,364	10,903	24.6
광역자치단체전입금	50,465	41,968	8,497	20.2
기초자치단체전입금	4,802	2,396	2,406	100.4

- 자치단체이전수입 증액분은 모두 비법정이전수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제7항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교육청으로 지원된 전입금으로,

7) 2016년도 예산(대한민국 정부) 총칙 제12조의3에 의한 국고 목적예비비 2,000억원 중 서울시교육청 배분액 253억 1,900만원

※ 예산총칙 제12조의3일반회계 예비비 중 200,000,000,000원은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⑥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⑦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따른 서울시의 교육지원사업 전입금 64억 6,400만원, 기타 법령 또는 서울시·교육청 협력사업에 따른 전입금 20억 3,300만원 등 총 84억 9,700만원이 증액요구 되었으며,
- 기초자치복합화시설 BTL 원금 및 이자 지원금, 영어원어민 인건비 및 제 경비 등 9개 사업 24억 600만원이 증액요구 된 것임

3. 기타이전수입

- 기타이전수입은 특성화고 산업현장 중심교육 강화 사업,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시도분담금 등 자치단체간이전수입 및 민간이전수입 5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④ 세출예산관련 검토

-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의 증액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교부된 목적지정 지원금에 의한 것으로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이후 교부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된 우선확정 예산⁹⁾은 70건, 601억 3,400만원임

<표 4-1> 목적지정 지원금 재원별 내역

(단위 : 건, 백만원)

재 원		건수	확정액
합 계		70	60,134
중앙정부이전수입	국고보조금	4	25,448
	특별교부금	39	23,198
자치단체이전수입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2	8,497
	기초자치단체전입금	9	2,406
기타이전수입	기타지원금	2	10
	전입금	4	575

9) 4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목적지정 지원금 : 2016. 8. 1.~ 11.23. 우선확정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목적지정지원 : 회계연도 개시~2016. 7.31 우선확정분

1. 교육사업비

- 교육사업비는 1조 7,739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7,576억 6,900만원보다 0.9%, 163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증액분(163억 1,000만원) 전액(100%) 성립전 우선확정 사용 예산을 편성한 것임

<표 4-2> 교육사업비 정책사업별 추경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

정책사업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 감			
			금액 (C=A-B)	비율 (C/B)	일반재원	우선확정
합 계	1,773,979	1,757,669	16,310	0.9	0	16,310
인적자원운용	20,485	20,468	17	0.1	0	17
교수학습활동지원	376,544	363,679	12,865	3.5	0	12,865
교육복지지원	1,276,943	1,274,338	2,605	0.2	0	2,605
보건/급식/체육활동	15,616	15,488	128	0.8	0	128
평생교육	22,917	22,368	549	2.5	0	549
직업교육	1,945	1,945	0	0.0	0	0

<표 4-3> 교육사업비 우선확정사업 재원별 내역

(단위 : 백만원, %)

추경 증감액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지자체 전입금		전입금		기타 지원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0	16,310	1	128	35	6,864	18	8,733	4	575	2	10

- 3억원 이상 우선확정 사업은 학습준비물 지원 등 13개 사업 129억 4,000만원임

<표 4-4> 성립전 우선확정 내역(3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순	재원	세부사업	사업내역	우선 확정액
1	광역자치 단체전입금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학습준비물 지원	2,761
2	광역자치 단체전입금	학기중급식비지원	저소득층자녀 학기 중 평일 급식비지원	1,964
3	광역자치 단체전입금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영어 원어민인건비 및 제경비	1,804
4	특별교부금	특성학교교육내실화지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1,622
5	특별교부금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공연시설 구 축(10교)	1,000
6	광역자치 단체전입금	방과후학교운영	중학교 방과후공부방 운영	602
7	특별교부금	특수교육교복지지원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구입비 지원	597
8	특별교부금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자율형 사립고 입학전형개선 (자사고 자기주도적 학습전형 운영)	578
9	특별교부금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특성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492
10	특별교부금	학생생활지도지원	안전체험센터(보라매, 광나루) 운영	420
11	광역자치 단체전입금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사회적 배려대상자 서울영어마을 단체입소비 지원	406
12	특별교부금	특성학교교육내실화지원	산업단지-도제학교연계 강화	350
13	특별교부금	특성학교교육내실화지원	직업기초능력평가 시도분담금	344

- 학습준비물 지원¹⁰⁾(초등교육과)은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의한 조례상 전출금(교육지원금)으로 서울시가 공립초(558교) 학생 대상 학습준비물 지원비¹¹⁾와 공립초 1~2학년 대상 교과연계 교실 놀이교구 지원비¹²⁾ 27억 6,10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성립전 우선사용 확정된 광역자치단체전입금임

10) 사업별 설명자료 p.42

11) 학습준비물 지원 : 학생1인당 6,500원×398,861명=2,592,597천원

12) 교과연계 교실 놀이교구 지원비(교육청과 1:1 대응투자) : 1학급당 30,000원×5,627학급=168,810천원

- 저소득층 자녀 학기중평일급식비 지원¹³⁾(참여협력담당관)은 서울시의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9억 6,400만원을 우선 확정된 것으로 무상급식에서 제외되는 국제중, 각종 중 및 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¹⁴⁾ 자녀 중 교육청 지원 비율을 초과하는 일정 비율 내의 학생(4,512명)¹⁵⁾에 대하여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임
- 영어 원어민인건비 및 제경비 지원¹⁶⁾(중등교육과)은 서울시의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8억 400만원을 우선 확정된 것으로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 외국어교육 내실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82개교에 배치된 82명의 원어민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지원¹⁷⁾(진로직업교육과)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16억 2,200만원을 우선 확정된 것으로 산업단지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산업현장중심의 도제식 직업교육을 운영하고자 10개교¹⁸⁾에 운영비 및 시설장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공연시설 구축¹⁹⁾(교육혁신과)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우선 확정된 것으로 2017학년도 협력종합예술활동 운영 예정 중학교 10개교에 1억원씩 지원하여 교내 여유 교실을 문화예술교육활동 공간으로 조성²⁰⁾함으로써 종합예술활동 지원 및 교육과정 내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임

13) 사업별 설명자료 p.11

1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이하

15) 교육청 및 서울시의 저소득층 자녀 학기중 급식비 지원 비율

(단위:명)

급	총학생수 ('16.4.1) (A)	저소득층자녀 학기중급식비 지원학생수 (B)	총 지원비율 (C=B/A)	교육청지원		서울시 지원	
				비율(D)	학생수	비율(E=C-D)	학생수
고	306,049	53,479	17.5%	16%	48,967	1.5% (교육청 지원비율 초과 5% 이내)	4,512

※ 2011년도 서울시의 저소득층학생 중식비 지원확대계획(교육격차해소과-1510, 2011.2.18.)에 의하여 2011년부터 매년 교육청 지원비율(16%) 초과 5% 이내(21%까지) 범위의 학생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16) 사업별 설명자료 p.53

17) 사업별 설명자료 p.121

18) 공립 4교(성동공고, 서울전자고, 성수공고, 용산공고)

사립6교(서울아이티고, 영등포공고, 인덕공고, 한양공고, 세명컴퓨터고, 광운전자고)

19) 사업별 설명자료 p.24

20) 여유교실 2실 규모 또는 기존 강당이나 체육관의 리모델링을 통해 방송, 음향, 조명, 객석, 무대시설 확충하여 뮤지컬, 연극, 영화창작활동을 위한 공연시설 구축

2. 시설사업비

- 시설사업비는 6,567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6,131억 3,000만원) 보다 7.1%, 436억 5,300만원 증액된 것이며, 금번 추경예산 세출예산(601억 3,400만원)의 72.6%에 해당됨

<표 4-5> 시설사업비 추경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B)	증 감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656,783	613,130	43,653	7.1

<표 4-6> 시설사업비 목적지정 지원금(우선확정)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재원	사업내역	우선확정액
합 계			43,653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소 계		34,971
	국고보조금 (국고 목적 예비비)	우레탄 체육시설교체(종암초 등 48교)	2,244
		석면제거(갈산초 등 45교)	16,635
		내진보강(성능평가 및 구일초 등 8교 내진보강)	6,440
	특별교부금	우레탄 체육시설교체(삼각산초 등 40교)	3,491
		지역교육현안수요(묘곡초 창호개선 등 17건)	6,161
학교시설 증개축	소 계		4,482
	특별교부금	지역교육현안수요(신구로초 강당겸체육관 증축 등 4건)	2,482
	기초자치단체전 입금	수송초 복합화시설비(2016년도 자치단체 분담금)	2,000
학교급식 환경개선	특별교부금	지역교육현안수요(신정여상 급식실 및 식당증개축 등 4건)	4,200

- 금번 추경에 반영된 시설사업비의 목적지정 지원금을 세부사업별로 검토하면,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의 목적지정 지원금은 총 349억 7,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53억 1,900만원, 특별교부금 96억 5,200만원임
- 국고보조금은 지난 2016년 9월 국회가 정부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 시, 유해물질(납성분)이 한국산업표준(KS) 기준치 이상 검출된 학교의 우레탄 트랙과 운동장 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국고 목적예비비²¹⁾ 2,000억원을 의결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배분된 253억 1,900만원²²⁾을 우선확정한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통보한 ‘국고 목적예비비 지원 계획²³⁾’ 및 자체 수립한 ‘2016년 국고 목적예비비 교육환경개선비 편성²⁴⁾’ 등에 따라 성립전 예산을 편성한 바,
- 40교의 트랙과 6교의 다목적 구장²⁵⁾ 우레탄 교체를 위해 22억 4,400만원, 냉난방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45교의 석면텍스 전면 제거를 위해 166억 3,500만원, 금년도 내진성능평가 결과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8교)의 보강공사 및 내진성능평가(66교)를 위해 64억 4,000억원을 안분하여 반영하였음
- **특별교부금**의 경우, 우레탄 체육시설 교체비 34억 9,100만원과 지역교육현안수요²⁶⁾에 의해 교부된 노후시설개선비 61억 6,100만원 총 96억 5,200만원을 우선확정하고 이를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임
- 우레탄 트랙 및 운동장 교체사업의 경우 특별교부금과 함께 국고 목적예비비 등의 지원으로 교체대상교 128교²⁷⁾ 중 우레탄 재시공을 선택한 사립 22교를 제외한 106교의 예산지원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됨

21) 2016년도 예산(대한민국 정부) 예산총칙 제12조의3 일반회계 예비비 중 200,000,000,000원은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22) 국고 목적예비비 시도별 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시도	국고 목적예비비			
	합계	우레탄 교체	통합관사 신축	교육환경개선
전국 합계	200,000	34,100	30,467	135,433
서울	25,319	2,244	0	23,075

23)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국고 목적예비비 지원 계획 알림(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5889, 2016.09.13.)
 中 집행계획 : 여야 합의내용을 반영하여 목적예비비는 우레탄 운동장 개선 및 교직원 관사 신축을 위한 총 소요액의 25%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석면, 내진보강 등 환경개선에 투자

24) 2016년 국고 목적예비비 교육환경개선비 편성(교육시설안전과-7544, 2016.10.26.)
 유해성 검출 우레탄 체육시설 관리 개선(체육건강청소년과-13300, 2016. 8.10)

25) 농구장, 족구장, 핸드볼장 등

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일부 생략)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7) 우레탄 트랙 및 운동장 교체 대상(2016. 6.30. 기준) 134개교 중 지원대상은 총 128개교
 - 6교는 예산 미지원(업체 재시공: 3교, 자치구 지원 : 1교, 자체예산 처리 등 : 3교)

<표 4-7> 우레탄 트랙 및 운동장 교체 예산지원 현황

(단위 : 교, 백만원)

재원부담	재원	지원교 수			예산액
		합계	트랙 및 운동장	다목적 구장 ^{주1)}	
합 계		116	106	10	6,870
서울시교육청	예비비	26	26	0	1,135
교육부	국고 목적예비비	46	40	6	2,244
	특별교부금	44	40	4	3,491

주 1. 2016. 10월 현재 다목적구장의 교체 대상은 총167교이며, 이중 10개교는 2016년도에 지원 157교는 2017년도 중 교육부와 5:5 공동부담으로 지원할 계획임

- 다만, 우레탄 체육시설에 대한 새로운 KS기준²⁸⁾ 수립이 2016. 11월 현재 완료 되지 않아 우레탄 재시공을 요청한 47교(공립 25교²⁹⁾, 사립 22교)의 사업은 2017년도 중에 시행될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지난 2016년 8월 우레탄 체육시설(다목적구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 전수 조사³⁰⁾ 결과에 따라 157개교의 다목적구장 교체사업도 내년도에 추진될 예정³¹⁾임
- 노후시설개선비는 화장실개선(6교) 29억 1,400만원, 창호개선(3교) 18억 8,000만원, 바닥개선(1교) 2억 700만원, 기타 노후환경개선(3교) 11억 6,000만원임
- 학교시설증개축 사업은 44억 8,2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24억 8,200만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20억원이 반영되었음
- 특별교부금은 신구로초, 신화중, 대일관광고의 강당 겸 체육관 증축³²⁾과 신도림고의 특별교실 증축을 위해 교부된 것임

28) 현행 KS기준의 유해물질 관리대상(중금속 4종)을 확대*(국가기술표준원, '16.12)하고, 공공체육시설 등 학교 이외의 시설에도 강화된 KS기준을 적용

* 관리대상 유해물질 추가 : 중금속 4종 + 비소·아연 등 중금속 15종 및 프탈레이트 6종
[자료출처 : 국무조정실, 환경부, 교육부 공동 보도자료, 2016.09.30]

29) 우레탄 재시공 희망교 중 공립 25교에 대한 예산은 대상학교에 전출함

30) 우레탄 체육시설(다목적구장) 유해성 검사 전수조사 실시 결과 제출 안내(체육건강과-14024, 2016.08.22.)

31) 우레탄 체육시설(다목적구장) 교체 총 예산은 58억 5,200만원으로 교육부와 5:5 공동부담 추진
- 서울시교육청 부담분은 2016년 추경 시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우레탄 체육시설 교체예산 27억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임

32)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16. 1.)

2. 지역교육현안수요, 가. 교부기준 중 발체

- 강당 및 체육관(다목적실 포함)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학교법인 등의 외부재원 확보 또는 확보계획을 통해 대응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강당 겸 체육관의 경우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에 따르면 외부재원의 대응투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 바, 신구로초의 대응투자분인 구로구의 전입금과 개방형다목적체육관³³⁾으로 추진되는 신화중의 양천구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금은 2017년도 중 교부·편성될 예정이며, 대일관광고는 학교법인의 대응투자로 추진될 예정임
-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인근지역 주차난 해소 및 학생·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강북구청 등이 자원분담하여 추진 중인 수송초 복합화시설³⁴⁾에 대한 강북구 분담금 20억원이 전입된 것임
- 학교급식환경개선의 경우,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4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아현초, 온곡초, 인현중, 신정여상의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사업으로 우선확정된 예산임

3. 민간투자사업상황

- 민간투자사업상황(BTL 상황)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임대료(원금 및 이자)와 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1억 7,100만원이 증액된 바,
- 민간투자사업으로 증축된 개봉초(도서관), 신도림고(도서관, 체육관) 복합화시설의 경우, 구로구와 서울시교육청이 BTL 원금 및 이자상환을 분담하고 있어 지난 8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구로구로부터 1억 7,100만원이 전입되어 이를 우선확정하고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임

4. 명사이월

-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도 예산 중 106건, 1,084억 9,700만원에 대해 명사이월 사업조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하였음

33) 개방형다목적체육관 : 학교수업시간 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보금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대응투자 30:20:50, 단 지자체 및 교육청 부담비율 조정가능)이 함께 건립한 생활체육시설

34) 수송초 복합화 사업 개요

- 위치 :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124길 14 서울수송초등학교 내
- 시설개요 : 연면적 9,291㎡ 내외(지하 2층~지상 4층)
 - 지하주차장, 급식실·학생식당, 정보센터, 체육관·생활체육시설
- 총 공사기간 : 2015.4월~2017.7월
- 총 공사소요액 : 152억 1,300만원
 - 교육청 40억 3,200만원, 서울시 78억 2,500만원, 강북구 33억 5,600만원

- 명시이월의 규모는 2015년도(113건, 795억 5,000만원) 보다 36.4%, 289억 4,700만원 증가한 바,
- 특별교부금의 연도말 교부(44건, 239억 3,900만원), 지난 9월 추경 편성(23건, 117억 400만원) 등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과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대규모의 학교신·증설비 이월(3건, 343억 1,500만원)에 의한 것으로 검토됨

<표 4-8> 최근 3년간 명시이월 현황(2016~2014)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A)	명시이월				
		건수	명시이월액(B)	전년대비 증감		
				비율(B/A)	증감액	증감율
2016	8,849,598	106	108,497	1.2	28,947	36.4
2015	8,284,188	113	79,550	1.0	65,252	456.4
2014	7,915,133	20	14,298	0.2		

· 다만, 추경편성 사업 중 전액 명시이월 사업(13건, 59억 8,600만원)의 경우, 다수의 사업이 학사일정 고려, 관련 공사와 병행추진 등을 사유로 이월을 요청한 바, 이는 추경 편성 시 예측 가능한 사항이었음에도 사업비 우선확보를 위해 예산을 편성한 사례로 판단됨

- 비록 명시이월이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35)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명시이월의 증가는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의회 예산감시권에 대한 존중의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의 예산편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사고 및 명시이월의 규모는 점차 감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가칭)천이초 학교신설(명시이월 222억원)

- 구로구 천왕2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신설되는 가칭 천이초등학교(남부교육지원청, 구로구 천왕동 소재, 36학급)는 201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35)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교육청과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간의 부지조성 및 계획지반고³⁶⁾ 조정에 대한 이견³⁷⁾으로 토지매매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명시이월을 요청³⁸⁾한 것임

- 계획지반고 조정이 지연될 경우 개교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므로 계획지반고 조정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함께 다각적인 협의 등으로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대림중·개일초·원신초 학교급식환경개선(명시이월 30억원)

- 대림중·개일초·원신초 학교급식환경개선은 9월에 추경 편성된 예산으로 3개교 모두 3개월이 소요되는 설계용역으로 연도 내 공사발주가 불가능함을 사유로 명시이월요구서를 제출³⁹⁾한 바,
- 명시이월요청된 학교급식환경개선비는 모두 건설비로 건설비의 특성상 사업부서인 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건강과가 직접 집행하지 못하고, 학교 시설지원과의 협조(공사시행)를 통해 집행하고 있어 그 소요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나, 하반기 추경 편성인 점을 감안하여 두 부서가 긴밀한 협조하였다면, 연도 내 실제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이

36) 계획지반고(計劃地盤高) : 건물 등 구조물의 토대로 되어 있는 땅의 높이를 가리키는 말로서 표준 해수면으로부터의 수직고로 표시됨

37) 교육청 : 현 지반보다 평균 3.9m 낮게 조성 요망
 서울주택도시공사 : 천왕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 준공(14.9.30)으로 추가 조성공사(절토 등)어려움

38) 가칭)천이초 학교시설 명시이월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과목	예산액	지출액	명시이월 요청액	명시이월요구사유
계	22,938	181	22,187	
토지 매입비	5,796	0	5,796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와의 부지조성 및 계획고 조정에 대한 이견으로 연도내 매매계약 불가능
건설비	17,142	181	16,391	토지매매 계약체결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39) 대림중·개일초·원신초 학교급식환경개선 명시이월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명시이월 요청액	명시이월요구사유
계	3,017	21	2,952	
대림중 식당설치 및 조리장 전면개보수	956	0	956	추경편성사업으로 설계진행중이나 3개월 정도 소요 예정으로 사업추진 기간 부족
개일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1,456	0	1,412	추경편성사업으로 설계용역(3개월 소요) 후 내년 2월 공사발주 예정
원신초 급식실 증축	605	21	584	추경편성사업으로 설계용역(3개월 소요) 후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제2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구축(명시이월 28억원)

- 동 사업은 서울학생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권역별 문화예술, 창의체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성동구에 위치한 동명초 별관동 및 유희부지를 활용하여 제2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동북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특별교부금) 30억 4,200만원 중 28억 1,200만원을 명시이월 요청하였음
- 당초 39억 9,200만원의 사업규모로 2016년 12월 개관하고자 하였으나, 2차에 걸친 계획변경으로 총 사업비는 73.6%, 29억 4,000만원이 증가된 69억 3,2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개관도 2018년 2월로 변경되었음
- 이와 같은 계획변경으로 인해 설계가 지연되어 연도 내 공사착공이 불가능함에 따라 예산액의 92.4%인 28억 1,200만원을 명시이월 요청한 것임

<표 4-9> 제2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구축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본안(A)	변경안	재변경안(B)	증감(B-A)
총사업비		3,992	4,500	6,932	2,940
	특별교부금	3,042	좌동	좌동	0
	자체예산	950	1,458	3,890	2,940
총 규 모		2,307.2㎡	좌동	2,707.2㎡	400㎡
건립 계획	별관동	교실활용	좌동	대수선	
	증축동	수평증축(1,400㎡)	좌동	수평·수직증축(1,800㎡)	
개관예정		2016.12월	2017. 9월	2018. 2월	

- 다만, 2017년도 예산안에 서울시교육청 자체투자분 38억 9,000만원⁴⁰⁾이

40) 2017년도 예산안 중 제2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구축 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	예산액	비고(사업별 설명자료)
합 계		3,890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집기구입비	350	p.605
	기획 및 실무추진단 운영비	2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제2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건설비	2,958	p.1632~1672
	동명초 주차장확보 및 진입로 정비	312	
	분관 및 후관 연결통로 증축	250	

편성되어 2017년도 중 총 67억 200만원을 집행하게 될 것으로 검토되는
바, 설계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예산의 이월 및 개관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IV. 심사결과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2.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3. 소수의견 요지 : 없음

2016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1548
----------	------

제출연월일 : 2016년 11월 2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 이유

- 용도가 지정된 성립 전 사용분을 계상하기 위해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2. 제안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편성액		기정예산액 (B)	증감내역	
		금액(A)	비율		증감액(A-B)	비율(%)
총 규 모		8,628,272	100%	8,568,138	60,134	0.7%
세 입	중앙정부이전수입	5,060,251	58.7%	5,011,605	48,646	1.0%
	자치단체이전수입	2,640,717	30.6%	2,629,814	10,903	0.4%
	기 타 이 전 수 입	11,220	0.1%	10,635	585	5.5%
	자 체 수 입	175,915	2.0%	175,915	0	0.0%
	지 방 교 육 채	421,065	4.9%	421,065	0	0.0%
	전 년 도 이 월 금	319,104	3.7%	319,104	0	0.0%
세 출	인 건 비	5,248,321	60.8%	5,248,321	0	0.0%
	기 관 운 영 비	38,419	0.5%	38,419	0	0.0%
	학 교 운 영 비	717,279	8.3%	717,279	0	0.0%
	교 육 사 업 비	1,773,979	20.6%	1,757,669	16,310	0.9%
	시 설 사 업 비	656,784	7.6%	613,131	43,653	7.1%
	지 방 교 육 채 및 BTL	183,254	2.1%	183,083	171	0.1%
	예 비 비 및 기 타	10,236	0.1%	10,236	0	0.0%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